

공공미술 컨서시움 매뉴얼

1. 경과

1995년 문예진흥법 건축물 미술장식에 관한 조항에 의해 1%법 의무화

1997년 IMF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미술장식제도 폐지 검토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제출(책임 연구원 양현미) ; 최초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공공미술 개념과 재단설립등을 골자로하는 개혁방안 제시됨.(홈페이지에 전문게재)

96년말부터 97년 6월까지 54건(1백억원대)의 미술장식품의 제작, 설치를 둘러싸고 작가 24명과 건설업체를 포함한 건축주등 40여명이 미술장식비용의 일부를 비자금 조성에 불법유출한 사례 적발됨.

2000년 아파트 등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의 설치와 관련해 15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그 동안 미술계에서 미술장식품시장을 독식해, 소위 '전국작가'로 지목받아온 L모씨를 비롯해 건축관계자, 화랑대표, 미술장식품심의위원, 공무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

'환경조형물 제도 개혁과 공공미술 정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사당, 공청회실)

11월 정범구(민주당), 이미경(민주당)의원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정안 발의(홈페이지에 전문게재)

정범구 의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기본개념을 미술장식에서 "공공미술장식"으로 바꾸고,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대신 미술장식비용을 문예진흥기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시함.

이미경 의원은 대표발의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기본개념을 일단 미술장식에서 "환경조형"으로 바꾸고 건축주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1%이상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 제시함.

2001년 2월 '서울시 환경조형물 실태조사'와 결과보고서 발간. (주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강남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의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화, 설문조사, 제도개혁방안 제시됨. (홈페이지에 전문게재)

6월 '난상토론, 왜 공공미술인가' 토론회 개최(미술인 네트워크 포럼A,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주최); 기존 제도개혁방안의 보완, 외국의 공공미술 사례 등이 제시됨.

6월 '누구를 위한 공공미술인가', 전시회 개최(포럼A, 문화연대 공동주최)

6월 공공미술 콘서시움 준비위원회 구성, 홈페이지 개설www.artinpublic.org.

7월 공공미술 콘서시움을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인협의회'로 개칭할 것을 결정

2. 공공미술 개혁방안 요지 해설

'건축물 미술장식'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의 1%를 미술장식에 의무적으로 할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95년 문예진흥법 및 시행령에 의해 널리 확산되어 왔습니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이하 미술장식제도)는 미술이 공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자체로는 선진적인 문화제도입니다. 그러나 미술장식제도는 그간 도시문화환경을 개선하고 미술가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시각공해물을 대량으로 양산해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왔고, 작가들 역시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응모의 기회조차 가질 수 상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작품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로 인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등 그 문제점이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미술장식제도 전반에 걸쳐 온갖 비리가 판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작가 선정에서 작품 설치에 이르기까지 건축주, 화랑, 작가, 공무원, 심사위원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알선수뢰, 비자금 조성, 탈세, 이면계약, 매수, 담합 등은 이미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미술장식품은 그것이 놓여지는 공간의 성격, 지역사회 맥락이나 주민 요구와는 무관한 낯선 조형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미술장식 제도는 미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존폐위기에 휘말릴 정도로 온갖 비리와 제도적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 제도는 결국 개혁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동안 비리가 발생하는 제반 과정과 비리 유형이 파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심의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결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립된 건축물 미술장식법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미술품 설치의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공공적 기능의 충족을 기하려면 '공공미술'(public art)의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미술은 이미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공공장소

속에 있는 모든 미술작품, 문화시설, 예술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된 의미의 공공미술은 단순히 미술가의 작업실에서 공공장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공미술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적인 목적보다는, 지역의 특징과 성격, 향유자의 생활을 반영하는 내용을 중시해야 합니다. 또 문화환경의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은 공공미술이 아닌가?

건축물 앞에 서있는 소위 '문패 조각'이나 공공장소의 기념비도 당연히 공공미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미술장식은 공공미술의 한 영역이며, 공공미술은 장식의 기능을 포함하여, 소통, 교육, 환경, 비평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미술 자체의 개념이 크게 확장되어있는 현대미술과 마찬가지로, 문화시설(갤러리, 극장, 휴게공간, 아카이브, 도서관 등) 및 문화행위(문화프로그램 및 기획등)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공공미술이 꼭 건축물과 1:1로 대응하여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공공미술은 그것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공공기금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 조각가들은 '공공미술'개념으로 설자리가 줄어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조각은 개념에 있어서나 물질적 재료에 있어서나 특정한 형식과 매체에 집중되어온 반면, 공공미술의 개념은 조각개념을 확장하고 표현의 다양성을 촉발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기금화되면 심의와 수주과정 등이 투명해지면, 기존의 수십명에 제한되어 있던 응모의 기회가 대폭 열리게 됩니다. 모두 자유 공모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상당부분이 자유공모가 되어야 하며, 일부는 공개된 제한공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의 방법으로,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와 같이 '공공미술기금'(public art fund)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민간주체의 '공공미술위원회'(public art council) 혹은 '공공미술재단'을 지방자치체와 중앙정부 산하에 설립하여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미술기금이란 공공건물의 경우는 지자체와 중앙의 공공미술기금에 일정비율(0.8%-1%)의 액수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공미술기금에 일정비율을 출연하여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크게 두세 가지 의문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 결국 공공미술 재단(또는 위원회)이 누구에 의해 구성되는가에 따라 이 제도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화와 재단설립은 최소한 건축주, 공공기관과 화상, 작가 사이의 밀실담합과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과정

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감사와 감시의 대상(국회 및 지자체 의회, 기획예산처, 국세청 감사원 등)이 되며,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부정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조차 알 수 없는 구조는 바뀔 수 있으며, 따라서 부정 비리, 독식 등의 위험부담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대형건물은 건축주의 사유재산인 동시에 직장인, 시민들의 공공공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형건물과 공공시설이 경제적 이윤의 목적에 의해서만 세워진다면 도시는 더욱 황폐하고 비정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3%까지 공공미술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공공공간이 협소하고 도시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훌륭한 공공미술들은 건물이나 장소를 명소로 만들어 그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는 현행대로 1%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0.8%나 이 이하로 비율을 낮추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기금출연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재단의 자체 운영비가 많아진다면 실효가 없지 않을까?

현재 정부의 슬림화 방향에 따라 공공재단, 위원회, 기금, 준조세 등은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체의 운영비로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경제적인 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체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미술기금의 경우, 현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비율이 30%라고 볼 때, 공공미술 재단의 자체 운영비는 이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단위의 행정비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적지 않은 이점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미술재단(또는 위원회)은 걸보기에는 슬림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경제적 효율을 크게 늘이는 것입니다.

- 재단은 또 하나의 문화 관료제를 추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재단이 사무처만 덩그러니 두고 심의에만 개입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 1) 심의위원의 선정과 구성(윤번제/임기제)
- 2) 프로젝트별 큐레이터의 선정
- 3) 공공미술 작가, 중개기관 등의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4) 지역 공공미술 종합계획 수립
- 5) 공공미술에 대한 공모, 홍보, 실태조사
- 6) 공공미술의 교육 및 관리
- 7) 작품가격 산정기준 마련

8) 정기적 백서발간

3. 전망

-공공미술 기금화는 정부시책과 어긋나지 않는가?

현재 국회에서는 새로운 기금 창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체적인 구조개혁 방향이 기금, 기부금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 문예진흥원의 위상과 구조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공공미술제도의 문제점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미술제도와 문예진흥법의 수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하지만, 일단 새로운 기금창설이 어렵다면 우선 문예진흥법의 장르중심 장식법을 공공미술 개념으로 전환하고, 기금(재단) 부분은 문예진흥원의 개혁에 발맞추어 문예진흥기금내부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차선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이 재단이나 기금이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 기금운영이 되니 차선택으로 검토할만한 안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문예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의 수정과 지방자치제의 조례를 수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제도정책현황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0.8% 기금/ 1% 미술장식 중의 선택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

공공의 문화적 권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건축주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세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 1) 0.6%를 작품에 사용하고 0.4%를 기금에 출연(자신의 건물에 자신이 원하는 미술장품을 설치)
- 2) 0.9%를 기금으로 출연(자신의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
- 3) 0.8%를 기금으로 출연(공공장소에 미술작품 설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건축주 자신이 발주할 경우 0.4%를 기금으로 납부하고 이에 더하여 0.6%를 작품제작과 설치에 할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0.8%를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기금으로 낼 경우 0.2%를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발주할 경우에도 0.4%는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금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기금조성에 대한 저항감도 완화되고, 기금조성 동기도 부여될 것입니다.